

의안번호	2200487
의 퇴 인	강대식의원
회 답 일	2024.8.14.
추 계 번호	24D10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이하 “소년소녀병”)¹⁾에게 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수당, 의료지원, 보철구 지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964억원, 2030년 5,529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2조 9,699억원(연평균 5,94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보상금 (안 제12조)	590,568	610,123	608,827	587,593	549,088	2,946,199	589,240
본인	75,579	62,984	51,330	40,817	31,606	262,316	52,463
유족	514,989	547,139	557,497	546,776	517,482	2,683,884	536,777
부양가족수당 (안 제15조의2)	5,051	4,346	3,672	3,040	2,462	18,572	3,714
의료지원 (안 제42조)	435	609	790	979	1,180	3,992	798
보훈병원	207	269	342	429	532	1,779	356
위탁병원	228	340	448	551	647	2,214	443
보철구 지급 (안 제43조의2)	330	268	213	165	124	1,099	220
합 계	596,384	615,346	613,502	591,778	552,855	2,969,863	593,9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안 제4조제1항제9호의2에서 6·25참전 소년소녀병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당시 기준)의 사람으로 정의함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보상금)	소년소녀병 및 소년소녀병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규정
2	안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소년소녀병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 지급	의무규정
3	안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소년소녀병 및 그 자녀포함	재량규정
4	안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소년소녀병 및 그 자녀 포함	재량규정
5	안 제42조(진료)	75세 이상 소년소녀병을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함	의무규정
6	안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보철구 지급대상에 소년소녀병 추가	의무규정
7	안 제44조(의학적 재활등)	소년소녀병의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사업 수행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보상금)	○	
2	안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	
3	안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	추가재정소요 없을 것으로 예상
4	안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추가재정소요 없을 것으로 예상
5	안 제42조(진료)	○	
6	안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	
7	안 제44조(의학적 재활등)	×	추가재정소요 없을 것으로 예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소년소녀병은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생존자 7,165명, 사망자 25,384명, 총합 32,549명을 기준으로 함
- 안 제22조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에 소년소녀병을 포함하고 있는데, 소년소녀병이 고령임(2024년 현재 평균연령 90세, [표 2] 참조)을 감안하여 교육지원 대상이 되는 자녀는 없을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2012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만 실시
- 안 제29조의 취업지원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가점취업과 기업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예산 수반 없이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44조의 재활 관련 치료의 경우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진료를 통해 지원되고 있고, 보훈병원 진료비에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재활체육을 위해 수원에 보훈재활체육센터를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년소녀병 등 유입이 있더라도 운영 상 큰 비용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상금 지급(안 제12조)

-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추가재정소요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산출함
- 첫째, 생존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둘째, 소년소녀병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임

(1) 생존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 지급

-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금 추가재정소요는 보상금 단가에 현재 참전유공자로서 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차감한 차액을 대상자 수에 곱하여 산출함
- (대상자) 소년소녀병 수는 입대일 기준 17세 이하의 6·25참전 등록자 수인 7,165명에 통계청의 남자사망률을 적용하여 향후 생존자 추정

[표 2] 소년소녀병 연령별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명)

연령	82세	83세	84세	85세	86세	87세	88세	89세	90세	91세
대상수	5	8	19	125	278	556	877	1,254	1,596	1,831
연령	92세	93세	94세	95세	96세	97세	98세	99세	합계	평균연령
대상수	398	109	58	19	16	8	6	2	7,165	90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지원단가) 소년소녀병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단가에 현재 소년소녀병이 참전유공자로서 수령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액을 차감하여 산출

[표 3] 최근 5년간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 월단가 현황: 2020~2024년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	1,346	1,386	1,414	1,535	1,612	4.6

[표 4] 최근 5년간 참전명예수당 월단가 현황: 2020~2024년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참전명예수당	320	340	350	390	420	7.0

[표 5] 보상금 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 월단가(A)	1,764	1,845	1,931	2,020	2,113
참전명예수당 월단가 (B)	481	515	551	590	632
차액(A-B)	1,283	1,330	1,379	1,430	1,481

□ (추가재정소요) 위에서 산출한 대상자 수에 월지원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표 6] 소년소녀병 보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년소녀병(A, 명)	4,909	3,945	3,101	2,379	1,778	
지원단가(B, 천원)	1,283	1,330	1,379	1,430	1,481	
소요비용(A×B×12, 백만원)	75,579	62,984	51,330	40,817	31,606	262,316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소년소녀병 사망 시 유족보상금 지급

□ 소년소녀병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소년소녀병이 고령인(2024년 현재 평균연령 90세) 점을 감안하여 유족을 배우자로만 한정하여²⁾ 유족보상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2) 유족 중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만 보상금 지급대상이고, 소년소녀병의 평균연령이 90세이므로 부모 또한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함

- (대상자) 기사망한 소년소녀병(25,384명)의 배우자 수, 소년소녀병 생존자(7,165명) 사망에 따른 배우자수로 구분하여 통계청 여자사망률을 적용하여 향후 대상자 추정
- 기사망한 소년소녀병(25,384명)의 연령분포는 소년소녀병 생존자(7,165명)의 연령분포([표 2] 참조)와 동일하다고 가정
 - 기사망자 및 생존자 수에 통계청 유배우자율을 곱하여 배우자 수를 산출한 후, 3살의 연령차가 있다고 가정하여 통계청 여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향후 대상자 추정
 - 통계청 유배우자율(2020년 인구센서스)은 80~84세가 83.7%, 85세 이상은 75.5%임
 - 소년소녀병과 배우자 간 연령차이와 관련,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태통계(혼인·이혼)』에 따르면, 혼인연령 차이는 1981년 3.4세에서 2023년 2.5세로 나타나고 있고, 소년소녀병의 혼인 시기가 1981년 전으로 추측되므로 3세의 연령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7] 유족보상금 대상자(배우자) 추정: 2025~2030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사망자의 배우자(A)	17,042	14,913	12,832	10,842	8,976	7,270
소년소녀병 생존자의 배우자(신규)(B)	4,811	4,209	3,622	3,060	2,533	2,052
소년소녀병 생존자의 누적배우자 ($C=B_{t-1} \times (1 - \text{사망률}) + B_t$)		8,419	10,865	12,241	12,667	12,312
합계(A+C)		23,332	23,697	23,083	21,643	19,581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개정안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보상금(상이등급 1~5급 배우자, 6급 상이 사망배우자에 준함)에 준하여 지급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4.6%를 적용하여 추정

[표 8] 유족보상금 단가 현황: 2020~2024년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유족보상금	1,404	1,446	1,518	1,601	1,681	4.6

□ (추가재정소요) 위에서 산출한 대상자 수에 월지급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표 9] 유족보상금 지급에 따른 총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년소녀병(A, 명)	23,332	23,697	23,083	21,643	19,581	
지원단가(B, 천원)	1,839	1,924	2,013	2,105	2,202	
소요비용(A×B×12, 백만원)	514,989	547,139	557,497	546,776	517,482	2,683,884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부양가족수당 지급(안 제15조의2)

□ 소년소녀병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소년소녀병 생존자 중 부양가족수를 추정한 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 (대상자) 소년소녀병 생존자 7,165명 중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에 한정하며, 생존자 수에 통계청 유배우자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3살의 연령차가 있다고 가정하여 통계청 여자 사망률 적용하여 향후 생존 배우자 추정

○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 규정³⁾하고

3) 법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있는데, 소년소녀병이 고령이므로 미성년자녀는 없을 것으로 보고, 배우자에 한정

- (지원단가) 부양가족수당 단가 10만원은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추계 기간 동안 10만원으로 유지
- (추가재정소요) 위에서 산출한 대상자 수에 지원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표 10] 부양가족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년소녀병의 배우자(A, 명)	4,209	3,622	3,060	2,533	2,052	
지원단가(B, 천원)	100	100	100	100	100	
소요비용(A×B×12, 백만원)	5,051	4,346	3,672	3,040	2,462	18,572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의료지원 (안 제42조)

(1) 보훈병원

- 개정안에 따라 소년소녀병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추가되면,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일학도의용군인 배우자와 선순위유족 1인에게 진료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⁴⁾ 이와 동일하게 소년소녀병 배우자와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보

3.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3호·제18호에 따른 무궁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훈병원 진료비의 6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소년소녀병 본인은 참전유공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의 90%를 이미 지원받고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소년소녀병 생존자 중 배우자와 소년소녀병 사망 시 그의 선순위유족을 합하여 보훈병원 진료대상자를 추정

- 생존 소년소녀병 7,165명에 대한 배우자수는 통계청의 연령대별 유배우자율(80~84세: 83.7%, 85세 이상: 75.5%)을 곱한 후 생존 소년소녀병과 3세의 연령차가 있다고 가정한 후 통계청의 여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
- 선순위유족수는 생존 소년소녀병에 대하여 통계청 남자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신규 사망자수를 추정하고(신규 사망자 모두 선순위유족이 있다고 가정), 누적 선순위유족수는 전년도 신규 사망자수에 사망률을 곱하고 당해연도 신규사망자 수를 합하여 누적 선순위유족수를 추정

[표 11] 보훈병원 지원대상자(배우자 및 선순위유족) 추정: 2025~2030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년소녀병의 배우자(A)	4,811	4,209	3,622	3,060	2,533	2,052
소년소녀병 신규 사망자 (신규 선순위유족)(B)	1,179	1,077	964	844	722	601
누적 선순위유족 ($C=B_{t-1} \times (1 - \text{사망률}) + B_t$)		2,256	3,220	4,064	4,786	5,387
합계(A+C)		6,465	6,842	7,124	7,319	7,439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연간 수진횟수)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60% 감면대상)의 2023년도 수진횟수(입원 0.1회 외래 0.5회 약제 0.3회)를 적용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표 12] 국가유공자 유가족(60% 감면대상) 보훈병원 진료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입 원	진료연인원 (명, A)	143,498	118,572	115,728	108,716	155,634	2.1%
	의료지원대상 자(명, B)	1,180,433	1,188,994	1,158,635	1,164,433	1,165,285	-0.3%
	연간 수진횟수 (회, A/B)	0.1	0.1	0.1	0.1	0.1	2.4%
	1회당 진료단가 (원, C/A)	24,718	38,331	43,620	46,644	66,618	28.1%
	총진료비 (백만원, C)	3,547	4,545	5,048	5,071	10,368	30.8%
외 래	진료연인원(명, A)	585,299	518,211	541,386	532,790	561,355	-1.0%
	의료지원대상 자(명, B)	1,180,433	1,188,994	1,158,635	1,164,433	1,165,285	-0.3%
	연간 수진횟수 (회, A/B)	0.5	0.4	0.5	0.5	0.5	-0.7%
	1회당 진료단가 (원, C/A)	22,281	23,523	23,815	23,835	28,599	6.4%
	총진료비 (백만원, C)	13,041	12,190	12,893	12,699	16,054	5.3%
약 제	진료연인원 (명, A)	563,864	505,113	472,443	469,746	347,593	-11.4%
	의료지원대상 자(명, B)	1,180,433	1,188,994	1,158,635	1,164,433	1,165,285	-0.3%
	연간 수진횟수 (회, A/B)	0.5	0.4	0.4	0.4	0.3	-11.1%
	1회당 진료단가 (원, C/A)	40,403	47,387	53,223	54,762	30,769	-6.6%
	총진료비 (백만원, C)	22,782	23,936	25,145	25,724	10,695	-17.2%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1회당 진료단가) 보훈병원 입원(66,618원), 외래(28,599원), 약제(30,769원) 진료비 단가에 최근 5년간 상승률(입원 28.1%, 외래 6.4%, 약제 -6.6%)을 곱하여 추정
- (추가재정소요) 위에서 산출한 대상자 수에 수진횟수 및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표 13]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A, 명)		6,465	6,842	7,124	7,319	7,439	
연간수진횟수 (B, 회)	입원	0.1	0.1	0.1	0.1	0.1	
	외래	0.5	0.5	0.5	0.5	0.5	
	약제	0.3	0.3	0.3	0.3	0.3	
1회당 진료단가 (C, 원)	입원	140,127	179,541	230,043	294,749	377,656	
	외래	34,487	36,708	39,072	41,588	44,266	
	약제	25,084	23,432	21,890	20,449	19,102	
진료비 (D=A×B×C, 백만원)	입원	121	164	219	288	375	1,167
	외래	37	57	76	96	115	382
	약제	48	48	47	45	42	230
	합계	207	269	342	429	532	1,779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위탁병원

- 개정안에서는 75세 이상 소년소녀병을 위탁병원 대상자로 추가하고 있는데, 75세 이상 소년소녀병은 참전유공자로서 이미 위탁병원 대상자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으며, 소년소녀병 사망 시 선순위유족이 위탁병원 대상자로 추가되므로⁵⁾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현행법에 따라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유족 1명은 위탁병원 대상자임⁶⁾

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6) 이 법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이하 생략)

제42조(진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 (대상자) 소년소녀병 생존자 7,165명에 통계청 남자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신규사망자를 추정한 후 누적 선순위유족을 추정
 - 선순위유족수는 생존 소년소녀병에 대하여 통계청 남자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신규 사망자수를 추정하고(이들 모두 선순위유족이 있다고 가정), 누적 선순위유족수는 전년도 신규 사망자수에 사망률을 곱하고 당해연도 신규사망자 수를 합하여 누적 선순위유족수를 추정
 - 75세 이상인 자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중 75세 이상인 자의 비율 58.5%(국가보훈부 제출)를 곱하여 추정

[표 14] 위탁병원 대상자 추정: 2025~2030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년소녀병 신규 사망자(신규 선순위유족)(A)	1,179	1,077	964	844	722	601
누적 선순위유족($B=A_{t-1} \times \text{사망률} + A_t$)		2,256	3,220	4,064	4,786	5,387
누적 선순위유족 중 75세 이상자($B \times 58.5\%$)		1,320	1,884	2,377	2,800	3,151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연간 수진횟수)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60% 감면대상)의 2023년도 수진횟수(입원 3.1회 외래 4.3회)를 적용
- (1회당 진료단가) 위탁병원 입원(24,704원), 외래(17,178원) 진료비 단가에 최근 5년간 상승률(입원 3.7%, 외래 5.1%)을 곱하여 추정
- (추가재정소요) 위에서 산출한 대상자 수에 수진횟수 및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표 15]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족(60% 감면대상) 위탁병원 진료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입 원	진료연인원(명, A)	220,181	183,378	159,251	108,012	168,665	-6.4%
	의료지원대상(명, B)	40,531	39,983	39,983	40,492	53,864	7.4%
	연간 수진횟수(회, A/B)	5.4	4.6	4.0	2.7	3.1	-12.9%
	1회당 진료단가(원, C/A)	21,332	23,018	24,509	24,954	24,704	3.7%
	총진료비(백만원, C)	4,697	4,221	3,903	2,695	4,167	-3.0%
외 래	진료연인원(명, A)	394,043	334,810	262,859	187,983	233,418	-12.3%
	의료지원대상(명, B)	40,531	39,983	39,983	40,492	53,864	7.4%
	연간 수진횟수(회, A/B)	9.7	8.4	6.6	4.6	4.3	-18.3%
	1회당 진료단가(원, C/A)	14,080	15,077	15,392	17,517	17,178	5.1%
	총진료비(백만원, C)	5,548	5,048	4,046	3,293	4,010	-7.8%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16] 위탁병원 진료 지원 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A, 명)		1,320	1,884	2,377	2,800	3,151	
연간수진횟수 (B, 회)	입원	3.1	3.1	3.1	3.1	3.1	
	외래	4.3	4.3	4.3	4.3	4.3	
1회당 진료단가 (C, 원)	입원	27,578	28,608	29,677	30,786	31,936	
	외래	19,941	20,957	22,026	23,148	24,328	
진료비 (D=A×B×C, 백만원)	입원	114	169	221	270	315	1,089
	외래	114	171	227	281	332	1,125
	합계	228	340	448	551	647	2,214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보철구지급 (안 제43조의2)

- 개정안에 따라 보철구 지급대상에 소년소녀병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대상자) 소년소녀병 생존자 7,165명에 통계청 남자사망률을 적용하여 향후 생존자를 추정한 후 보철구 지급대상자 비율인 4.0%를 곱하여 산출
 - 2023년 예산 기준 보철구 지급대상 국가유공자 수는 117,645명이고, 보철구 지급인원수는 4,751명으로 그 비율은 4.0%임

[표 17] 보철구 지급대상 국가유공자 현황: 2023.12.31. 기준

(단위: 명)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6·18자유 상이자	재해부상 군경	재해부상 공무원	특수임무 부상자	애국 지사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합계
55,716	49,297	141	3,306	19	5,718	194	1,129	6	2,119	117,645

자료: 국가보훈부

- (지원단가) 최근 5년간 보철구 예산을 지급대상자수로 나누어 지원단가를 2023년 161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 1.0%를 곱하여 추정
 - 보철구에는 팔의지, 다리의지, 척추보조기, 목발, 지팡이, 전동침대 등 사용연한이 1년에서 10년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본 추계에서는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 추정된 대상자 수에 보철구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표 18] 보철구 지급 사업 소요예산 및 1인당 지급단가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지급인원(A)	6,020	5,454	5,256	4,896	4,751	-5.7
지급예산(B)	9,304	8,022	7,768	7,656	7,656	-4.8
지급단가 (B÷A)	1.55	1.47	1.48	1.56	1.61	1.0

[표 19] 소년소녀병 보철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년소녀병(A)	4,909	3,945	3,101	2,379	1,778	
보철구 지급대상 ($B=A \times 4.0\%$)	198	159	125	96	72	
지원단가(C)	1.66	1.68	1.70	1.72	1.73	
소요비용($B \times C$)	330	268	213	165	124	1,099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